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 공모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지역 문예회관의 기획·제작 역량 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통해,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문예회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 사업소개

□ 사업목적

- 문예회관의 자체 역량, 자원, 인력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특성화를 지원하여 제작역량 강화 및 자생력 제고(창·제작, 프로그램 기획, 전용극장화 등)
- 문예회관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민 향유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12.
- (사업예산) 10,000백만원(국고보조금) * '26년 정부안 기준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지원대상) 전국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 (지원내용) 문예회관 주도로 차별화된 공연콘텐츠를 기획, 창·제작하는 등 문예회관만의 특화된 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연사업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전국 90개 내외 문예회관 선정 및 지원

예산규모	1개 문예회관별 지원규모	선정규모
9,355백만원	최소 50백만원 ~ 최대 200백만원	90개 내외 문예회관

※ '26년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규모가 변경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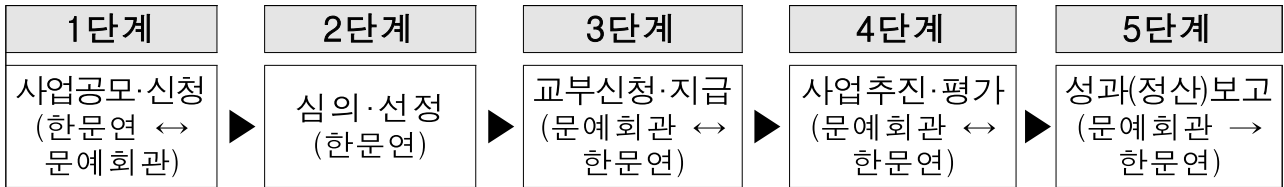
- (지원방식) 소속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신청액의 20~30% 이상 필수 매칭

구 분	지원비율	기관부담율	비고
시, 군, 구 재정자립도 20% 이상	70%	30%	광역시 및 도립 문예회관 포함
시, 군, 구 재정자립도 20% 미만	80%	20%	

※ 지방재정통합정보공개시스템, 2025년도 예산기준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당초) 기준

□ 운영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추진방침 확정 및 관리·감독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선정-정산-성과관리 등 운영
- (지역 문예회관) 공연콘텐츠 기획·제작 등 공연개최, 예산 집행·정산



□ 주요 추진방향

구분	주요내용
문예회관 기획·제작 기능 강화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콘텐츠 기획 및 창·제작 또는 기 보유 레퍼토리가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예회관 경쟁력·자생력 제고 등 운영 활성화 기여
문예회관 중심 지역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문예회관 공연환경을 고려한 지원을 통한 ▲(문예회관) 기획·제작 중심 전환, 공실률 감소, 공공성 역할 및 기능 강화 ▲(지역사회) 지역 문화예술자원 활성화 및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특화된 공연콘텐츠가 ‘발굴-육성-정착’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 → 지역 문예회관 중심으로 안정된 공연예술 창작환경 조성 기여
공연콘텐츠 브랜드 가치 창출	공연콘텐츠 법적 보호 및 중장기적으로 문예회관의 경제적·전략적 경쟁력과 수익 창출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IP) 강화하여 브랜드 가치 창출 및 확보
자부담 필수 매칭 통한 자원 효율성 극대화	소속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 일부를 문예회관 자부담 (지방비)으로 필수 매칭 시켜 사업성과 극대화 및 책임성 강화 → 취약한 문화예술분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 제공
공연예술계 종사자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공연예술 생태계 이해 관계자 간 창·제작 시스템 사례 공유 및 협업·교류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아트페스티벌 연계 추진 →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및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 기여
참여예술인 권리보장	공연 참여자(출연진, 스태프 등) 보호를 위해 표준 계약서 체결 및 예술인 고용보험, 안전교육 등 의무화 실시

□ 기대효과

- 지역 문예회관의 기획·제작 역량 강화 및 경쟁력·자생력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기여
-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안정된 공연예술 창작환경 구축 및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II. 공모요강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대상	신청자격
전국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법 제9조에 의한 공연장으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재된 문예회관 또는 • 미등재된 문예회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했거나 공기업(공단, 공사 등)에 의해 설립 또는 위·수탁 중인 문예회관

□ 지원 및 선정 규모

- 문예회관에서 수립한 특성화 계획(방식, 규모 등) 따라 예산 차등 지원

지원규모	선정규모	선정방식
최소 50백만원 ~ 최대 200백만원	90개 내외 문예회관	사업 심의 시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 세부 공모내용

- (수행기간) 2026년 2월 ~ 12월 둘째 주 종료
 - (신청분야)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 중 1개 특정 장르를 선택하여 특화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주요내용) 단순 예술단체 초청 등 일회성(대관 등) 공연이 아닌 문예회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여건, 문예회관 역량(기획력, 인적 자원 등), 지역 문화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문예회관만의 특성화 및 브랜드 구축
- * 단, 문예회관별 특화된 브랜드 구축 및 확립을 위해 문예회관 간 공동 창·제작은 불가

<신청 프로그램 예시>

- (신작 공연콘텐츠 제작) 문예회관이 자체 프로젝션을 구성하여, 지역 문화 자원 또는 장르 특화의 공연작품을 신규 발굴하여 창·제작
 - (기존 레퍼토리 정착) 동 사업으로 전년도 선정된 공연프로그램 또는 문예회관에서 기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연콘텐츠 재공연
 - (시리즈·축제 기획) 공연장·로비 등 공간을 활용하여 공연프로그램을 주간 또는 월간 단위 주기적인 시리즈 형태나, 문예회관 중심의 장르특화 공연예술 축제 등을 신규기획 또는 기존 프로그램 확대(스케일업)·개편하여 기획·운영
 - (장르 특화 전용 극장 화) 문예회관이 특정 장르를 특화하고자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즌에는 특정 장르 관련 공연을 시리즈 형태로 구성
- ※ 위 참여방식은 문예회관 특성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예시이며, 위와 무관하게 문예회관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계획해도 무방

[참고] 국내외 특성화 사례

<국내사례>
<p>1. [장르 특성화]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을 기념하며 시작, 현재까지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로 자리 잡음 ▶ 매해 새로운 주제에 맞춰 열리며 각 교향악단의 개성이 돋보이도록 고전부터 현대 창작곡 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성하여 진행함. 다양한 음색의 정상급 연주자들의 협연도 함께 하여 교향악 축제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p>2. [장르 특성화] (사)춘천국제고음악제 <춘천국제고음악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춘천리코더페스티벌로 시작, 2005년 ‘한일 고음악 교류 연주’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운영 중 ▶ 바로크, 르네상스 등 근대 이전의 음악을 당시 악기와 연주법으로 되살리는 고음악(Early Music) 장르 축제로서 매년 9~10월경 춘천문화예술회관, 성당, 시청, 박물관 등에서 개최
<p>3. [기획·제작 특성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설의 리틀 농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공공극장의 창·제작 시스템 및 민간 프로덕션 협력의 모범사례로 2018년 대학로에 첫 입성하였으며, 제3회 한국뮤지컬어워즈(2019) 안무상 노미네이트, 제8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즈(2019) 안무상 수상 ▶ 지역 문예회관 개발 작품 중 최초로 해외 라이선스를 성사(2024년), 일본 도쿄, 오사카 공연 티켓 판매율 90% 달성
<p>4. [기획·제작 특성화] 국립정동극장 세실 <창작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2022년부터 ‘국립정동극장 세실 창작ing’이라는 명칭으로 진행 중 ▶ 쇼케이스, 낭독 등 창작 초기 단계 이후 무대에 오르지 못한 창작 작품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 무용, 연극, 뮤지컬 4개 분야 대상 열린 공모를 통해 재공연 기회 제공
<p>5. [시리즈 특성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부터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아침 개최되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대표 마티네 콘서트로 클래식 입문자를 시작으로 애호가까지 다양한 관객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구성
<p>6. [시리즈 특성화] 국립극장 <정오의 음악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부터 매월 특정한 목요일 정오에 개최되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브런치 콘서트로 국악의 품격과 일상의 여유가 만나는 시간을 이어온 국립극장의 시그니처 공연
<국외사례>
<p>1. [장르 특성화] 탄츠테아터(Tanztheater, 독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츠테아터는 무용(Tanz)과 연극(Theater)을 결합한 양식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 ▶ 1978년 초연 된 <콘택트호프>는 2000년에 60세 이상 노인들이, 2008년엔 지역의 10대 청소년들이 공연에 참여하였으며 전 세계 다양한 지역으로 유통된 대표적인 작품임
<p>2. [시리즈 특성화] 월요일 저녁 콘서트(Monday Evening Concerts, 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9년 피터 에이츠와 프랜시스 멀렌이 창립한 MEC(비영리)는 가장 오래된 현대음악 시리즈 ▶ 추방된 유럽 이민자들과 거장 할리우드 스튜디오 뮤지션들이 당대의 가장 도전적인 솔로와 실내악에 몰두할 수 있는 장으로 구상. 현재까지도 콜번 스쿨의 지퍼 콘서트 홀, 게티 뮤지엄, LAXART 갤러리,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등에서 개최

- (자부담 매칭) 소속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액의 20~30% 이상 필수 매칭*

- 재정자립도 20% 이상 소재 문예회관 → 자부담 30% 이상 매칭
- 재정자립도 20% 미만 소재 문예회관 → 자부담 20% 이상 매칭

- (공연횟수) 신청 프로그램 참여방식 및 내용에 따라 최소 2회 ~ 5회 이상 개최
 - (^신작 공연콘텐츠 제작) 최소 2회 이상, (^기존 레퍼토리 정착) 최소 5회 이상, (^시리즈·축제 기획) 주간 또는 월간 단위 최소 4회 이상(시리즈), 최소 2일 이상(축제), (^장르 특화 전용 극장화) 최소 4회 이상

* 위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경우, 최소 2회 이상 신청해야하며, 사업 선정 이후 공연 횟수 축소는 불가함

- (프로덕션 구성) 공연콘텐츠 기획 및 창·제작 시 문예회관이 소재한 지역 예술단체 협업* 또는 자체 프로덕션 구성** 가능. 단, 예술단체와 공동협업 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되 주요 기획·제작 역할은 문예회관이 주도적으로 참여 필수

* 예술단체 협업 시 지역 기준(5개 권역):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강원권
 ** 자체 프로덕션 구성 시 문예회관이 직접 작품 기획, 투자, 제작 주체로 참여해야하며, 연출·작가·안무 등 전문가 및 출연진은 오디션 또는 자체 섭외 구성

- (지식재산권(IP)) 기획, 창·제작된 공연콘텐츠의 법적 보호 및 중장기적으로 문예회관 경쟁력과 수익 창출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단독 또는 협업 단체와 협의 후 등록, 보유
- (참여프로그램 제한) 아래 사항 중 한곳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불가 대상으로 판명 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 선정 된 예술단체 또는 국·공립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 2025년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에 선정 된 축제 프로그램
- 기획재정부 「보조금법」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 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 기타 유의사항

구분	주요내용								
사업 운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지침 준수)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사업 브랜딩 강화를 위해 공통로고, 주최·주관·후원 명기 등 공통 홍보지침 마련 및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실시 •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의무 가입도입에 따라, 보조 사업에 참여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필수 • (예술인 권리보장) 공연 참여자(스태프, 출연진 등) 대상 표준 계약서 체결, 상해보험 등 가입 및 안전교육 필수 • (성과평가) 평가연구용역 활용, 계획-집행-성과단계로 평가영역 구분하여 서면(진행계획서, 성과보고서 등) 및 현장(진행계획서 유지여부 등) 평가 실시. <table border="1" data-bbox="347 831 1418 98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평가영역 설정</th> </tr> </thead> <tbody> <tr> <td>계획단계</td> <td>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계획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판단</td> </tr> <tr> <td>집행단계</td> <td>집행 시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과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td> </tr> <tr> <td>성과단계</td> <td>사업성과의 목표달성 정도 및 성과검증을 위한 체계마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 토대로 우수사례 발굴 및 차기년도 사업(개선, 선정 등)에 반영 • (지원취소) 선정 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사전 협의 없이 관련 업무를 타 단체(기획사)로 이관할 경우 지원 취소 • (문예회관 공간 활용) 문예회관 실내외 공연장, 로비 등 충분히 활용 하되, 선정 후 문예회관 시설 외에서 사업 수행 시 지원 취소 	구분	평가영역 설정	계획단계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계획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판단	집행단계	집행 시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과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성과단계	사업성과의 목표달성 정도 및 성과검증을 위한 체계마련
	구분	평가영역 설정							
계획단계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계획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판단								
집행단계	집행 시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과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성과단계	사업성과의 목표달성 정도 및 성과검증을 위한 체계마련								
예산편성 및 정산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금 처리 방안) 공연 수익금 발생 시 문예회관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국고 지원 비율만큼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시 관람내역(매표현황, 수입금 내역 포함) 필수 제출 • (자기부담금(기관부담금) 우선 집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자기 부담금 포함 보조 사업 추진 시 자기부담금(기관부담금) 우선 집행 • (자부담 비율 유지) 사업 수행 시 기관부담금 비율이 사업 신청 시 비율보다 낮아질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을 시 지원 취소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table border="1" data-bbox="347 1720 1418 1805"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12월 공연 시, 사업비 집행은 해당 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함</td> </tr> <tr> <td>※ 정산보고서 제출 시, 세부 집행내역 및 증빙 서류 제출 필수</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검증 실시)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기관부담금))에 대한 회계검증 실시 및 검증 보고서 제출 필수 • (정보공시) 동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문예회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필수 	※ 12월 공연 시, 사업비 집행은 해당 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함	※ 정산보고서 제출 시, 세부 집행내역 및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12월 공연 시, 사업비 집행은 해당 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함									
※ 정산보고서 제출 시, 세부 집행내역 및 증빙 서류 제출 필수									

III.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선정위원회를 구성, 신청 프로그램별 프레젠테이션(PT) 심의를 통해 문예회관 공연콘텐츠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심의기준)

심의 기준 및 가중치		세부 평가내용
타당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의도 명확성 및 프로그램 독창성 • 공연콘텐츠의 우수성·예술성 • 차별화된 공연브랜드 경쟁력 및 대중성
사업 수행능력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예술단체 협업 등) 가능성 • 예산규모 적절성 및 홍보·마케팅 방안의 현실성 • 사업운영을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재정 등)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브랜드 공연으로 정착·확산 가능성 • 예술적 성과로서의 지역 연계성 및 확장성

IV. 공모일정 및 신청안내

□ 공모 및 접수일정

- (공모기간) 2025. 11. 18.(화) ~ 2025. 12. 23.(화) 18:00
- (접수기간) 2025. 11. 25.(화) ~ 2025. 12. 23.(화) 18:00
- (설명회) 2025. 11. 25.(화) 15:00 / 세종예술의전당 3층 시크릿씨어터(다목적실)
 - *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제출 불가
 - *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3일 전 접수 권장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양식 참조), 공연장 등록증
 - * 신규 기획 및 창·제작 시 대본, 악보, 무대안 등 공연콘텐츠 관련 추가 제출
 - * 기 보유한 공연콘텐츠로 신청 시 지원신청서에 영상자료 URL(링크) 제출
- (문의) 문예진흥부 / 02-3019-5805, 5881, 5891

□ 심의결과 발표

- 2026년 1월 말 예정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www.kocaca.or.kr) 공지 및 문예회관 통보

[출처: 지방재정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서울	본청	75.44	강북구	15.56	금천구	21.59
	종로구	39.84	도봉구	16.76	영등포구	34.34
	중구	55.71	노원구	16.55	동작구	28.19
	용산구	37.32	은평구	15.7	관악구	17.15
	성동구	32.9	서대문구	21.58	서초구	52.62
	광진구	23.03	마포구	29.16	강남구	54.8
	동대문구	20.29	양천구	23.19	송파구	32.83
	중랑구	15.1	강서구	19.43	강동구	24.89
	성북구	17	구로구	19.61		
부산	본청	38.38	동래구	18.07	강서구	39.58
	중구	22.63	남구	17.07	연제구	17.5
	서구	12.41	북구	9.88	수영구	16.33
	동구	14.75	해운대구	24.88	사상구	15.97
	영도구	9.49	사하구	15.07	기장군	28.06
	진구	17.7	금정구	15.63		
대구	본청	38.18	서구	12.52	수성구	24.11
	중구	25.84	남구	10.08	달서구	18.12
	동구	14.38	북구	15.96	달성군	26.95
	군위군	9.72				
인천	인천본청	46.36	연수구	29.9	서구	27.53
	중구	42.07	남동구	16.78	강화군	11.96
	동구	12.77	부평구	15.65	옹진군	10.05
	미추홀구	13.23	계양구	14.58		
광주	본청	35.53	서구	19.63	북구	12.51
	동구	14.16	남구	12.77	광산구	18.54
대전	본청	36.78	중구	12.02	유성구	25.73
	동구	9.88	서구	16.28	대덕구	13.51
울산	본청	41.04	남구	25.92	북구	24.31
	중구	14.59	동구	16.25	울주군	31.75
세종		54.31				
경기	본청	45.36	의정부시	22.11	안성시	28.53
	수원시	42.86	시흥시	34.07	포천시	19.6
	성남시	53.69	파주시	28.51	의왕시	37.8
	고양시	32.27	광명시	35.86	하남시	43.21
	용인시	47.87	김포시	33.41	여주시	21.11
	부천시	28.12	군포시	28.59	동두천시	12.57
	안산시	34.24	광주시	31.68	과천시	41.64
	안양시	35.85	이천시	45.42	양평군	17.32
	남양주시	28.01	양주시	26.49	가평군	17.11
	화성시	52.02	오산시	34.85	연천군	15.29
	평택시	41.62	구리시	27.14		

구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강원	본청	28.19	삼척시	13.01	화천군	8.18
	춘천시	18.9	홍천군	12.2	양구군	8.63
	원주시	18.1	횡성군	11.97	인제군	8.52
	강릉시	17.08	영월군	13.14	고성군	10.19
	동해시	17.48	평창군	12.62	양양군	13.72
	태백시	15.08	정선군	14.47		
	속초시	17.77	철원군	10.98		
충북	본청	28.76	보은군	9.87	진천군	28.64
	충주시	17.32	옥천군	11.16	괴산군	10.65
	제천시	14.05	영동군	11.8	음성군	22.11
	청주시	29.08	증평군	15.88	단양군	12.29
충남	본청	31.64	논산시	10.65	청양군	9.32
	천안시	33.65	계룡시	14.46	홍성군	13.74
	공주시	12.87	당진시	21.62	예산군	13.69
	보령시	13.56	금산군	9.27	태안군	12.46
	아산시	32.37	부여군	10.01		
	서산시	18.63	서천군	8.92		
전북	본청	22.93	남원시	8.98	장수군	7.57
	전주시	21.96	김제시	9.77	임실군	8.69
	군산시	17.32	완주군	16.12	순창군	8.26
	익산시	14.15	진안군	6.68	고창군	9.54
	정읍시	9.94	무주군	8.65	부안군	9.61
전남	본청	24.72	구례군	7.66	무안군	14.27
	목포시	17.37	고흥군	6.36	함평군	8.54
	여수시	23.78	보성군	7.37	영광군	11.93
	순천시	19.48	화순군	13.47	장성군	17.63
	나주시	16.21	장흥군	8.51	완도군	7.21
	광양시	20.9	강진군	8.47	진도군	8.68
	담양군	11.3	해남군	7.82	신안군	6.74
	곡성군	8.89	영암군	12.08		
경북	본청	25.47	상주시	8.37	고령군	11.42
	포항시	20.99	문경시	10.08	성주군	11.57
	경주시	19.07	경산시	19.78	칠곡군	17.68
	김천시	11.22	의성군	8.5	예천군	9.53
	안동시	9.84	청송군	7.91	봉화군	7.28
	구미시	26.21	영양군	6.08	울진군	12.25
	영주시	10.25	영덕군	7.72	울릉군	14.23
	영천시	12.3	청도군	9.3		
경남	본청	33.1	거제시	16.51	하동군	9.79
	창원시	31.42	양산시	28.21	산청군	10.48
	진주시	19.67	의령군	8.42	함양군	10.39
	통영시	13.06	함안군	16.12	거창군	8.97
	사천시	15.48	창녕군	13.07	합천군	8.06
	김해시	27.35	고성군	10.3		
	밀양시	12.99	남해군	10.04		
제주			33.07			